

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제 명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

개정사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
주요내용

-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 및 고지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79조의2 신설)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

송 승 환



2025년 7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57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2(방청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